##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35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이만희·김기웅·박대출

김미애 · 신성범 · 권영진

김장겸 · 임이자 · 서일준

최보윤 · 송석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 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 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취득·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
-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
- 제4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 반한 자
- 제48조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
- 제50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3부터 제4호의 7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12조제10항에 따라 현품검사 결과 물품포장 외부, 상업서류 와 품명이 다르거나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 ⑨ (생 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
	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
	는 자는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
	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
	<u>야 한다.</u>
<u>&lt;신 설&gt;</u>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
	(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
	<u>지 못한다.</u>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
	른 허가를 받거나 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
	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
	당되는 목재포장재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 저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 6. (생략)

② (생 략)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 설>

배 검역을 맡시 아니한 식물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금지품등을 취득・양도
• 운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폐
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u>할 수 있다.</u>
에43조(포상금)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
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
는 보관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47조(벌칙)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7. ~ 11. (생략)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3의2.~3의4. (생략)

4. ~ 10. (생략)

제50조(과태료) ①・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신 설>

<u>4의2</u>. ~ <u>4의6</u>. (생 략)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
령을 위반한 자
7. ~ 11. (현행과 같음)
제48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금지품등을 취득・양도・
<u>운반 또는 보관한 자</u>
<u>3의3</u> .~ <u>3의5</u> . (현행 제3호의2부
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2조제10항에 따라 현
품검사 결과 물품포장 외부,
상업서류와 품명이 다르거나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

4의3. ~ 4의7. (현행 제4호의2

한 자

	부터 제4호의6까지와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